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4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4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'94. 12. 22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라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 삭제로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함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근거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의 삭제로 존치 근거가 상실된 바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